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윤상현・안철수・김성원

김석기 • 이헌승 • 박덕흠

엄태영 · 김승수 · 조경태

백종헌ㆍ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법에도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

- 고(안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 라.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 (안 제28조제2항).
- 바.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 사.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중앙당창당 준비위원회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 목 중 "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정당·중앙당창 당준비위원회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500만원)
-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1억5천만원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역국국회의원후원회"를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지역당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된 중앙당"을 "등록된 중앙당"을 "등록된 중앙당· ·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를 "중앙당후원회· 지역당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당은 제외한다"를 "중앙당 및 지역당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당장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를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를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지역당준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본문 중 "중앙당"을 "중앙당·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1
목과 같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ㅂ}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u>포함한다</u>), 「공직선거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	<u> 포함한다</u>
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	
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	
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u>정당</u>	사 <u>정당</u>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u>를 포함한다</u>)의 정치활동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에 소요되는 비용	를 포함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4조(당비) ① ~ ③ (생 략)	제4조(당비) ① ~ ③ (현행과 같
	<u>수</u>)
<u><신 설></u>	④ 지역당은 해당 정당의 당헌

④ (생 략)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수있다.

1. ~ 7. (생 략) <u><신 설></u>

-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생 략)
 -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 ·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 · 당대표경선후 보자등 · 국회의원후보자등 · 지 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 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생략)

	ㆍ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
	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u>수 있다.</u>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	6조(후원회지정권자)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당(지역당창당준비위원
	회를 포함한다)
제	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2. -각 500만원---가. ~ 바. (생 략)가.<신 설>사.

3. • 4. (생략)

③ ~ ⑥ (생 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저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 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 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없다.

1. ~ 6. (생 략) <u><신 설></u>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
준비위원회후원회가 지역
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
에는 합하여 500만원)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당후원회는 지역당창당

② ~ ④ (생 략)

-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2. (생략)
 -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 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 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지역구</u>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② (생략)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후 저 원회는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거 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하거나 후원회의 지정

준비위원회우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1억5천만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u>.</u>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 · 지역당후원회
<u> </u>
 ② (현행과 같음)
에 (원행과 실름) 에 19조(후원회의 해산 등) ①
에19소(구천외의 애건 중) ① ==

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산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정 당으로 등록하거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지방 의회의원후보자가 각각 국회의 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 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대 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 의로써 등록된 중앙당, 당선된 국회의원 또는 당선된 지방의 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로, 후원회를 둔 대통령 예비후보자 · 국회의원예비후보 자 ·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대통령후보자 ·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의회의원후보자 · 지방자 치단체장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는 그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또
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
<u>등록된 중앙당·지역당</u>

- ·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 원회는 대통령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방의 회의원후보자후원회·지방자치 단체장후보자후원회로 본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중앙 당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후원 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후원 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 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 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 전의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 ④ (생 략)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저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 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 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 1. 후원회지정권자가 <u>중앙당(중</u> 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② \ <u>\\\\\\\\\\\\\\\\\\\\\\\\\\\\\\\\</u>
<u>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국</u>
회의원후보자후원회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1 <u>중앙당(중</u>
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다) 또는 당원인 경우

2. (생략)

- ② 후원회지정권자(중앙당은 제외한다)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 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제36조(회계책임 자에 의한 수입 · 지출)제5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 한다]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둔 중 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 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고 해산 된 경우에는 후원회로부터 기 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 산은 제1항제2호에 준하여 처 분하여야 한다.
- ③ ~ ⑦ (생 략)
-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저 (생 략)
 - ②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u>다)ㆍ지역당(지역당장당준비</u>
위원회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및 지역당은 제외한다
<u>중앙당창</u>
당준비위원회가 중앙당으로 또
는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지
역당으로
· ③ ~ ⑦ (현행과 같음)
세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 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6. (생략)
- ③ ④ (생 략)
-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다.
 - 1. ~ 4. (생 략)
 -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③ · ④ (현행과 같음) 29조(보조금의 감액)							
	3	• 4) (ক্	현행고	가 길	날음)	
1. ~ 4. (현행과 같음)		·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 <u>시·도당</u> 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 는 금액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후원회를 둔 <u>중앙당창</u> 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 2. ~ 6.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다.

시·도당
<u>및 지역당</u>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1 <u>중앙당</u>
<u>창당준비위원회·지역당창당</u>
<u>준비위원회</u>
2. ~ 6.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 · · · · · ·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u>.</u>

- 1. 2. (생략)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 (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④ (생 략)
-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회계보고"라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

1. •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u>다), 시·도당 및 지역당</u>
③
시·도당 및 지역당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회계보고) ①
1
가

(<u>시·도당</u>의 경우에는 1월 31 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 ·도당은 1월 31일)까지

2. (생략)

다. (생 략)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 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지방의회 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나. (생략) 4.·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u>시·도당 및 지역당</u>
나
<u>\lambda</u>
<u>•도당 및 지역당</u>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
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후원회(지역당창당준
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있는	는 때에	는 그	회계책약	임자는	
ユ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년	회계보고를	
하여	여야 한다	구 .			

- 1. (생략)
- 2. 후원회를 둔 <u>중앙당창당준비</u> 위원회가 소멸한 때
- 3. ~ 5. (생략)
- ③ (생 략)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 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6. · 7. (생략)
- ⑤ · ⑥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중앙당창당준비				
위원회 또는 지역당준비위원				
<u> </u>				
 3.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1. ~ 4. (현행과 같음)				
5				
중앙당·지역당				
0007110				
•				
 C 7 (처체기 가야)				
6.·7. (현행과 같음)				
5 · ⑥ (현행과 같음)				